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2-04

서 울 행 정 법 원

제 1 1 부

판 결

사 건	2013구합5504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원 고	[redacted] 유한회사
피 고	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변 론 종 결	2015. 10. 21.
판 결 선 고	2015. 10. 30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가 2013. 4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,525,500원, 지방교육세 2,072,490원, 합계 24,597,9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2-04

가. 원고는 2011. 4. 26.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,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,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, 2011. 5. 19. [redacted] 주식회사로부터 [redacted] 구 [redacted]동 [redacted] 아파트[redacted]동 [redacted]호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1,141억 원에 양수하였다.

나.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2012. 6. 28.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, 2012. 8. 23.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.

다. 원고는 2012. 9.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900,300,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(2010. 12. 27.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'구법'이라 한다)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100분의 50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8,006,000원, 지방교육세 1,800,600원을 신고·납부하였다.

라. 피고는 2013. 4. 10.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22,525,500원(가산세 4,519,500원 포함), 지방교육세 2,072,490원(가산세 271,890원 포함), 합계 24,597,990원을 부과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갑 제4호증의 1, 갑 제5호증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직권판단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,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·출력되었습니다.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5-12-04

2006. 9. 28. 선고 2004두5317 판결, 대법원 2010. 4. 29.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).

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, 피고는 2015. 10. 15. 납세고지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처분은 이미 효력이 소멸하였고, 이 사건 소는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.

3. 결론

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,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호제훈

판사 윤진규

판사 이민구